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年 8月

碩士學位 論文

韓·中 貿易紛爭과 韓國의 對應方案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于 宙

韓·中 貿易紛爭과 韓國의 對應方案

South Korea-China Trades Disputes and
Korean Counterpart Programmes

2008年 8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于 宙

韓·中 貿易紛爭과 韓國의 對應方案

指導教授 全 義 天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4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于 宙

于 宙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李城旼 (印)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李廷浩 (印)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全義天 (印)

2008年 5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iv
제 I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3
제 II 장 한·중 교역 및 투자 현황	4
제1절 한·중 수출입 현황	3
1. 수출입 현황	3
2. 교역 품목 현황	8
제2절 한·중 투자 현황	11
1. 투자 현황	11
2. 직접투자 현황	12
3. 업종별 투자현황	14
제 III 장 한·중 무역분쟁 현황과 사례	16
제1절 한·중 무역분쟁 현황	16
1. 대 중국 분쟁현황	16
2. 분쟁의 원인별 현황 및 분석	17
제2절 한·중 산업간 무역분쟁 사례	19

1. 중국산 마을분쟁 사례	19
2. 한·중간 反덤핑 규제	22
3. 지적재산권 분쟁	25
4. 신용장 및 서류하자관련 분쟁	28
5. 대금회수 관련 분쟁	30

제 IV 장 한·중 무역분쟁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	32
제1절 산업간 분쟁 대응방안	32
1. 통상조정시스템 구축	32
2. 선진무역구제기관 위상 확보	33
3. 통상자문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35
제2절 상사간 분쟁 대응방안	38
1. 당사자간의 협상력 강화	38
2. 불법행위 업계자제 노력 강구	39
3. 대금결제 위험도 사전대책 강구	40
4. 중국경제 모니터링 활동 확대	42

제 V 장 결 론

參考文獻	46
------------	----

表 目 次

<표 2-1> 중국의 대 한국 무역	5
<표 2-2> 한국의 대 중국 교역 동향	8
<표 2-3> 한국의 대 중국 주요 교역품목	10
<표 2-4> 한·중 투자동향	12
<표 2-5> 대 중국 직접투자 추이	13
<표 2-6> 업종별 대 중국 투자현황	15
<표 3-1> 2006년도 상사중재 접수 현황	17
<표 3-2> '02-'06년도 상사중재 분쟁 원인별 구분	17
<표 3-3> '02-'06년도 상사중재 분쟁 품목별 구분	18
<표 3-4> '02-'06년도 상사중재 분쟁 금액 규모별 구분	18
<표 3-5>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관세부과 내역	19

ABSTRACT

South Korea-China Trades Disputes and Korean Counterpart Programmes

Yu Zhou

Advisor : Prof. Jun, Eui-Cheon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ina and South Korea since August 24, 1992 to formally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ilateral trade growing, expanding mutual investment, a good development prospects have become mutually important economic partner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development also exist. With the continuous deepening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the market has become even more fierce competition, trade deficit, trade frictions, investment policy imperfect development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issues such as a factor hindering the process and the dangers. Only joint efforts of both sides, to take positive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to properly resolve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problems can improv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has been

not only to maintain the good momentum, but also i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healthy development, walked quickly forward, to a new level. China and South Korea are still broad prospects for cooperation and business opportunities, and from a strategic importance to the promotion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nd continually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to jointly create a better future is common for the two governments and peoples. As long as China and South Korea rely on each other economically, others, mutual benefit, and seeking common development, the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ill definitely achieve "win-win" goal, China and South Korea will work together behind more brilliant tomorrow.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중국경제는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연평균 9.4%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반면 성장과정에서 빈부격차, 도농격차, 부정부패, 환경악화, 자원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경제약국으로도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제의 근본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고물가, 자산시장의 거품, 공산품 공급과잉, 임금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 등 수출둔화 요인의 증가 등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

그러나 물가 지속 상승 여부, 자산시장 거품 붕괴 가능성, 공급과잉 조절 문제, 임금상승 및 위안화 평가절상 등 중국경제 발전의 리스크 요인은 존재하나, 임금인상을 제외한 요인들의 발생가능성은 비교적 낮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2007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겠지만 향후 5년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²⁾

1) 중국 경제를 이카루스(Icarus) 경제로 비유하기도 한다. 태양에 다가가려고 높이 날다가 날개가 녹아 추락한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처럼 중국경제 역시 위험한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자료 : Standard Chartered, "The Icarus economy", 2007.8.1)

2) 이승신·박현정, “중국 경제 리스크 진단과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08-1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3.21. p.1.

2008년은 중국 개혁개방 30년의 해이자 중국 수교 16주년의 해로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수출의존도 1위, 수입의존도 1위, 해외직접투자 1위의 나라가 되었다. 한중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관계를 지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³⁾

한·중 수교 16주년의 역사는 “중국 외교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양국간에 경제·통상·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속하고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⁴⁾

그간 양국관계에서 경제·통상 분야는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한국측 통계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제1의 수출대상국, 제1의 흑자대상국이다. 이와 같은 양국간 교역은 수교 당시의 63.7억달러 규모 대비 약 22.8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2005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한시, 양측은 오는 2012년까지 2천억달러 교역규모 달성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10년이내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⁵⁾

이러한 교역량의 증가는 곧 한·중 기업간의 무역분쟁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중국이 2001년 11월 WTO 가입에 따라 한·중 양국 간에 무역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과 더불어 사전 예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중 우호적의 무역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현대경제연구원, "한중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중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치리아(Chirea) 시대의 전개", 『경제현안분석』 08-03, 2008.5.22. p.1.

4) 한·중 양국은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1989년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구축한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이는 한·중 관계가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다음의 주요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5) 김홍규, “한중 관계 평가와 신정부의 대중정책 :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2.27. p.3.

국제간의 무역분쟁은 그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하면 법적 공방을 통한 해결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법률 환경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우선 사법적 판단은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역량과 더불어 증가추세 있는 대중국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연구방법으로 주로 기존의 문헌과 이론을 조사·정리하고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논의를 이루도록 하는 문헌연구 논문이다. 즉, 각종의 국내외 단행본 및 논문 등의 연구 자료와 통계를 통해 현재 한·중 두 나라간의 무역현황을 설명하고 한·중 두 나라간의 무역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 II 장에서는 한·중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한·중 무역분쟁 현황과 무역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제 IV 장에서는 한·중 무역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결론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제 II 장 한·중 교역 및 투자 현황

제 1 절 한·중 교역현황

1. 수출입 현황

중국은 1978년 말에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한 후 개혁, 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국제무역에 관심을 돌려 대외교역량의 증가로 인하여, 전 세계 무역액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11위에서 '99년에 9위로 뛰어올랐다. 이러한 성장세는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기간(2001년-2005년)에도 더욱 지속되었다.

중국의 개방형 경제발전 가속화와 대외경제의 지속발전추구, 지리적 여건과 양국의 산업구조 및 중국의 경제발전속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과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연평균 20% 정도의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01년말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92년 수교당시 중국 측 통계로는 5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한·중 교역규모가 2007년에는 약 1,599억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32배 이상 증가되었다.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시 후진타오 주석과 합의한 5년 내, 즉 2008년까지 교역규모 1,000억달러를 달성키로 한 목표를 3년 앞당겨 2005년에 달성하게 된 것이다⁶⁾.

교역의 급속한 신장추세에 따라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4년에는 수출입을 합쳐 한국의 첫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은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2천억달러 교역목표를 제시함으로써⁷⁾ 양

6) 李明星, “정상회담 이후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KIEP 한중경제포럼』 제03-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2003.7.31 참조

7) 지식경제부, “한중 투자협력확대 MOU 및 한중 구제협력 MOU 체결”, 보도자료,

국 간 경제통상관계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정상회담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⁸⁾인정을 선언하여 대중국 협력의지를 표명하였다.

<표 2-1> 중국의 대 한국 무역

(단위: 백만달러)

	대 한수출	대 한수입	대 한수출입	대 한무역수지
1992	2,438.0	2,623.0	5,061.0	-185.0
1993	2,860.0	5,360.0	8,220.0	-2,500.0
2000	11,286.6	23,207.9	34,494.6	-11,921.3
2001	12,544.4	23,395.7	35,940.1	-10,851.3
2002	15,508.0	28,581.0	44,089.0	-13,073.0
2003	20,104.8	43,160.5	63,265.0	-23,055.7
2004	27,809.5	62,165.6	89,975.0	-34,356.1
2005	35,117.0	76,874.0	111,991.0	-41,757.0
2006	44,500.0	89,800.0	134,300.0	-45,300.0
2007	56,100.0	103,800.0	159,900.0	-47,700.0

자료 : (1) KITA, 한국무역연구원(<http://lgin.kita.net>)중국경제DB,
한중통계, 1995.

(2)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http://www.koreaem.org.cn>) 2008.4.11.

2005.11.16

- 8)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란 물건 가격이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사회주의 경제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한국이 2003년 12월 중국을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선언함으로써 중국의 물건가격이 정부의 영향없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라고 인정한 것이다. 반덤핑조사를 할 때 시장경제국은 수출국의 내수가격과 해외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율을 산정한다. 하지만 비시장경제국은 수출국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해 덤핑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2008년 3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77개국이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위의 <표 2-1>에 의하며, 1992년 수교부터 2007년 12월 기간 동안 중국의 대 한국수출은 1992년 24.4억 달러, 1993년 28.6억 달러, 2000년 112.9억 달러, 2004년 278.1억 달러, 2005년 351.2억 달러, 2007년 12월까지 561.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대 한국 수입은 1992년 26.2억 달러, 1993년 53.6억 달러, 2000년 232.1억 달러, 2004년 621.7억 달러, 2005년 768.7억 달러, 2007년 12월까지 1,038.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 한국 수출과 수입의 증가 추세에 중국의 무역수지가 흑자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한·중 양 국가 간의 무역교역이 빈번해지면서 그 폭도 커지는 추세에 있다.

한편, 중국의 대 한국 총 교역액은 1992년 수교 때에는 50.6억 달러에 달했으나, 수교후의 2007년까지 총 교역액이 1,599억달러(중국측의 통계)에 기록했는데, 증가폭이 32배에 달했다.⁹⁾ 특히 중국의 대 한국 수입액은 1992년 수교 때 26억 달러에 달했으나, 2000년 232.1억 달러, 2001년 234.0억 달러, 2003년 431.6억 달러, 2004년 621.7억 달러, 2005년 768.74억 달러, 2007년 1,038.0억 달러에 기록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대 한국 수입액이 무려 40배로 나타났다.

세계의 시장 및 세계 공장으로서 위치한 중국의 이러한 고속성장은 인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왔으며, 인민들의 소득증대는 중국 수입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반면에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KOTIS)에 의하면 양국 간 교역은 대 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일찍 시작하여 75년~78년 기간에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4만~18만 달러의 소액 수입에 그쳤으나, 78년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 발표 직후인 79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여 5.6백만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1백만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처음 기록하였다.

또한 대중국 수출은 77년도에 1천 달러로부터 시작하여, 80년도에 처음으로 1백만 달러 이상인 15.4백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이후 85년도에 4천만 달러, 86년도에 1억 23.5백만 달러를 달성하고, 91년도에 1억 2.5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양 국가 간 무역 규모가 10억 달러를 달성한 년

9)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한·중 경제 관련 주요통계(2008년2월)”, 2008. 4. 11.

도는 87년으로 수출 2억 11백만 달러, 수입 8억 66억 6백만 달러, 무역적자 6억 55백만 달러, 총액은 10억 77백만 달러이었다.

1978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방식으로 시작된 한국의 대 중국 교역은 1992년 8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 2-2>에 의하면, 한·중 수교 첫 해인 1992년 63.7억 달러에서 2007년 1,450억 달러를 기록하여 한·중 수교이후 지난 15년간 22.8배로 증가했다. 1992년 대 중국 교역액은 63.7억 달러, 2002년 314.9억 달러, 2003년 411.5억 달러, 2004년 570.2억 달러, 2005년 793.5억 달러, 2006년 1005.8억 달러, 2007년까지 145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이 세계 정보통신기술(ICI)제품의 생산기지로 전환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로 인한 전자부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6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695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2년도의 수출 26.5억 달러를 비교할 때 2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역수입이 확대되고 수출호황으로 인한 원자재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대 중국 수입은 전년대비 25.5억 달러에 달했다. 1992년도의 수입 37.3억 달러와 비교할 때 수입 13.0배로 증가했다.

한국은 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5년간 연속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대 중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2억 달러 증가한 233.9억 달러로서 2005년에 이어 최고치를 갱신했다.

따라서,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여 한국 대외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 대중 부품소재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대중 부품소재 수출은 둔화되어 중국의 역수입 비중 확대하고¹⁰⁾ 위의 3가지 원인으로 인해 2007년 무역수지는 190억 달러로 감소했다.

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의 대중, 대일 무역 수지 변동요인 분석”, 2007.4.8 참조

<표 2-2> 한국의 대 중국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2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액	63.7	314.9 (0.2)	411.5 (30.6)	570.2 (38.6)	793.5 (39.2)	1,005.8 (26.8)	1,450 (22.9)
대 중 수 출	26.5	181.9 (1.4)	237.5 (30.62)	351.1 (47.8)	497.7 (41.8)	619.9 (24.6)	820 (18.0)
대 중 수 입	37.3	133.0 (3.9)	174.0 (30.8)	219.1 (25.9)	295.8 (35.0)	385.9 (30.4)	630 (29.8)
무 역 수 지	48.9	48.9	63.5	132.0	201.9	233.9	190

주: ()안은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출처: (1) www.china.go.kr '2006년 지방자치단체별 대 중국 교역현황과 특징', 중국경제 기본 정보시리즈 제2006-9호

(2) <http://www.koreaem.org.cn>. '한·중 경제 관련주요 통계(2008.2)'
2008. 4.11

2. 교역 품목 현황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와 같은 IT제품과 석유·석유화학 제품이다. 한·중 양국가간 주요 교역 품목현황을 최근 추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05년과 2006년 동안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2~2.5배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제품 교역액이 2005년 8.0억 달러, 2006년에는 28.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대 중국 평판디스플레이·센서 제품의 증가율이 2005년은 2004년보다 90.1%로 증가하였다. 2006년의 대 중

국 평판디스플레이·센서 제품의 증가율이 2005년을 비교하면 251.6%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컴퓨터, 철강관, 자동차부품, 광학기기는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2005년에 한국이 대 중국에 수출한 컴퓨터의 교역액이 50.7억 달러에 달했으나, 2006년에 접어들면서 대 중국에 수출한 컴퓨터의 교역액이 47.36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다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 대중수출의 증가율은 2004년도에 비해 -5.1%, 2006년에는 2005년도에 비해 -6.6%로 감소하여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철강관, 2005년에 대중 수출교역액이 34.1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2006년에 26.7억 달러로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2005년에 대 중국 수출의 증가율이 55.1%인데, 2006년에 -1.0%로 하락했다. 광학기기는 2005년도 대 중국 수출교역액이 38.2억 달러에 달했는데, 2006년 23.9억 달러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철강관 등이며, 매우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의류 수입도 2006년 기준으로 연간 28.4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컴퓨터 교역액이 33.2억 달러인데, 2006년에 42.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 2005년에 중국이 한국에 수출했던 반도체의 교역액이 19.0억 달러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무려 30.9억 달러로 급증했다. 반도체 대중국 수입의 증가율은 2005년에 증가율이 36.7%에서 2006년도에는 62.6%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알루미늄, 석탄등 원자재는 대 중국 수입이 감소세를 나타내거나,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었다. 알루미늄은 2006년에 10.9억 달러 증가율에서는 17.1%에서, 2007년 12.9억 달러로 증가율로는 17.9% 단지 0.8%만이 증가했다. 석탄의 대 중국 수입에는, 2006년 15.3억 달러가 되었는데, 2007년에 12.6억 달러에 감소했다.

<표 2 - 3> 한국의 대 중국 주요 교역품목

(단위: 백만 달러,%)

대중 수출품목	2006년	2007년	대중 수입품목	2006년	2007년
반 도 체	7,114 (117.0)	8,152 (14.6)	컴 퓨 터	3,324 (42.1)	4,202 (26.4)
석 유 제 품	3,254 (23.0)	5,014 (54.1)	반 도 체	1,902 (36.7)	3,092 (62.6)
컴 퓨 터	5,072 (-5.1)	4,736 (-6.6)	의 류	2,188 (4.5)	2,842 (29.9)
무선통신기기	3,708 (5.8)	4,241 (14.4)	철 강 판	1,982 (106.3)	2,604 (31.4)
합 성 수 지	3,670 (19.8)	3,962 (8.0)	전자응용기기	1,450 (35.2)	1,543 (6.5)
석유화학 합성원료	2,470 (36.3)	2,861 (15.8)	무선통신기기	826 (47.7)	1,386 (67.9)
평판디스플레이 이·센서	796 (90.1)	2,798 (251.6)	알 루 미 늬	1,097 (17.1)	1,293 (17.9)
철 강 판	3,413 (11.0)	2,669 (-21.8)	석 탄	1,529 (-1.8)	1,260 (-17.6)
자동차부품	2,693 (55.1)	2,665 (-1.0)	정밀화학원료	1,012 (35.3)	1,165 (15.2)
광 학 기 기	3,820 (113.3)	2,393 (-37.3)	정 전 기 기	921 (32.7)	1,144 (24.2)

주: ()안은 증가율

자료: KITA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한국의 대중, 대일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2007.5.05

제 2 절 한·중 투자현황

1. 투자 현황

1970년대 후반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한국과 중국은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정경분리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양국가간의 민간교류가 증대되기 시작하여 1988년 처음 시작되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후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1992년 정식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되어 양국 정부는 교역, 투자, 기술협력 및 항공 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가간 경제협력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왔다.¹¹⁾

IMF 금융위기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대중투자는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다음 <표 2-4>와 같이 2002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투자대상국이 되었다.¹²⁾ 2003년에 한국의 대 중국 투자액은 이미 20.9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 중국 총 신고수리 건수도 1,547건이었다. 2004년부터 한국의 대 중국 투자액은 28.0억 달러이며, 2005년 36.6억 달러이고, 2006년 35.0억 달러이며, 2007년까지 무려 45.0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한국의 대 중국 투자의 총신고수리건수도 2003년에 1,547건, 2004년 1,840건, 2005년 2,245건, 2006년 2,265건, 2007년까지 2,291건에 증가했다. 1968년부터 2007년까지 대 중국 누계투자건수가 17,837건이고 누계 대 중국 투자총액이 약 254.5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중국의 대 한국 투자액은 2002년에 0.7억 달러이며, 대 한국의 신청 건수도 812건에 달했다. 2003년부터 중국의 대 한국 투자액이 442건인 2.49억 달러, 2004년 552건인 0.5억 달러, 2005년 11.7억 달러에 급증하고, 2006년 671건인 0.68억 달러이고, 2007년까지 333건인 0.4억 달러에 달했

11) 탁세령,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진출관련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6.6. p.15.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교류 통계로 본 한·중 수교 15주년”, 지역경제포커스 Vol.1.No.12. 2007.7.10.p.9.

다. 1962년부터 2007년까지 대 한국 누계투자건수가 5,222건이고 누계 대 중국 투자총액이 약 18.0억 달러에 달했다.

< 표 2 - 4 > 한 · 중 투자동향

(단위 : 백만달러(건), 총 신고수리기준)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누 계
대중국 (건수)	993 (1,134)	2,092 (1,547)	2,802 (1,840)	3,666 (2,245)	3,502 (2,265)	4,504 (2,291)	25,454 (17,837)
대한국 (건수)	70 (812)	249 (442)	50 (522)	1,165 (596)	68 (671)	40 (333)	1,795 (5,222)

주: 1. 대 중국 투자의 총 누계는 1968년부터 2007년까지

2. 대 한국 투자의 총 누계는 1962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 <http://www.mofat.go.kr>

2. 직접투자 현황

한국기업의 중국 직접투자는 수교전인 지난 1991년까지 중국에 모두 99건, 6천5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건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한국 전체 해외투자의 56.5%와 27.5%인 841건, 6억3천4백만 달러로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투자금액 및 투자 건수에서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6년 투자건수 50.0%인 734건, 투자금액 20.1%인 9억3백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각각 37.3%인 770건, 투자금액 13.5%인 6억7천4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와 국내 경기둔화, 구조조정의 여파로 해외투자 자금 여력이 없어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신규투자를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대 중국 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실적 대비 7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부터 대 중국 투자 비중은 다음 <표 2-5>와 같이 한국의 대외투자액에 차지하는 12.4%인 6억4천 달러를 보이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27.7%인 10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2003년에는 대 중국의 실적투자금액 40.2%인 16억4천만 달러나 기록하고 있다. 2004년에는 투자비중이 38.4%인 22억9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2005년에 대 중국 투자비중이 40.3%인 25억8천만에 달하고 있었다. 2006년 상반기까지 대 중국 누계실적투자총액이 무려 152억4천만 달러에 달했고, 한국의 대외투자 비중이 24.0% 차지했다.

< 표 2 - 5 > 대 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억달러, 괄호 : 비중%)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누계 ('68)
신 고 기 준	전 체	556.0	63.7	63.4	59.1	80.6	88.0	70.8	953.1
	중 국	84.1 (16.0)	10.0 (15.7)	20.9 (33.0)	28.0 (47.3)	36.8 (45.6)	35.0 (38.7)	20.0 (28.3)	235.6 (24.7)
도 착 기 준	전 체	330.4	51.5	36.8	40.2	59.6	58.4	45.9	632.5
	중 국	53.1 (16.1)	6.4 (12.4)	10.2 (27.7)	16.4 (40.8)	22.9 (38.4)	25.8 (40.3)	15.7 (34.3)	152.4 (24.0)

주: 한국수출입은행, 2006년 해외 직접투자동향

자료: <http://www.koreaexim.go.kr>

3. 업종별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대 중국 업종별 투자현황을 보면 2006년 상반기 전산업과 제조업부문이 중국투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면서 최근 수년간은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었다.¹³⁾

다음 <표 2-6>와 같이, 전산업에 있어서 1988~1997년간 대 중국투자액은 3,614건인 361.7억 달러이고, 1998년~2001년간의 대 중국 투자액이 2,549건수인 242.1억 달러이고, 2002년~2006년 6월말까지 대 중국투자액이 8,595건수인 920.5억 달러에 기록했다. 제조업에 있어서 대 중국투자액은 1988~1997년간 대 중국 투자액은 3,151건인 293.3억 달러이고, 1998년~2001년간의 대 중국 투자액이 2,217건수인 203.6억 달러를 보이고, 2002년~2006년 6월말까지 대 중국 투자액이 6,562건수인 792.8억 달러에 기록했다.

한·중 양국가간에 합작투자가 빈번해지면서, 대 중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투자사업인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2006년 6월말까지 도소매업 대 중국 누계투자액은 839건수인 7.08억 달러에 달했다. 음식숙박업에 대하여 2006년 6월말까지 대 중국 누계투자액은 448건수인 3.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에 2006년 6월말까지 대 중국 누계투자액은 884건수인 약 3.8억 달러에 증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단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변화에 따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¹⁴⁾

13) 최근 중국의 유통업, 물류업 등 서비스업을 개방하면서 시장선점 효과를 얻으려는 국내업체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14) 투자지역별 동향을 보면,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칭다오(靑島), 이엔타이(煙臺)가 있는 산둥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난징, 쑤저우, 우시(無錫) 등이 있는 장쑤(江蘇)성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표 2 - 6> 업종별 대 중국 투자현황(투자액 기준)

(백만달러, %)

연 도	1988-1997		1998-2001		2002-2006		2007년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전 산 업	3,616.5	3614	2,420.6	2549	9,205.4	8595	15,242.5	14758
농림·어업	23.4	77	6.1	26	35.5	115	65.0	218
광 업	8.8	20	4.6	9	30.7	30	44.2	59
제 조 업	2,933.4	3151	2,036.1	2217	7,928.4	6562	12,898	11930
건 설 업	135.5	36	47.6	10	163.6	137	346.6	183
도·소매업	109.0	95	79.8	99	519.5	645	708.2	839
운수창고업	44.2	32	30.4	11	44.8	41	119.4	84
통 신 업	49.1	5	37.7	8	8.5	19	95.3	32
금융보험업	0.0	0	0.2	1	0.9	6	1.1	7
숙박· 음식점업	180.8	111	68.3	45	66.6	292	315.8	448
기타 서비스업	15.5	72	46.6	122	317.8	690	379.9	884
부동산업	116.6	14	62.4	1	88.5	58	267.5	73
기 타	0.1	1	0.8	0	0.6	0	1.4	1

주: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KITA(<http://kita.net>)

제 III 장 한·중 무역분쟁 현황과 사례

제 1 절 한·중 무역분쟁 현황

1. 대 중국 분쟁현황

한·중 수교 이후 한·중간의 수출과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더불어 분쟁건수나 금액등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수와 금액만을 집계한 것으로 한·중간 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아니다. 이외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분쟁은 총131건으로, 2006년도의 경우 다음 <표 3-1>과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한중간 분쟁건수는 22건(중재 5건 및 알선 17건)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대 중국 무역 분쟁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업체가 한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무역 분쟁은 총 22건으로 이를 통해 볼 때, 한국 기업들의 중국 업체에 대한 피해사례가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¹⁵⁾

15) 전윤중, “한중간 국제거래분쟁의 현황과 해결과제”, 『수출보험』, 2008.01.02월호, 한국수출보험공사, 2008.2.20, pp.21-22.

<표 3-1> 2006년도 상사중재 분쟁접수 현황

지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홍콩	UAE	싱가폴	이란	대만
중재 (건)	7	5	6	4	3	3	0	1	0	1
알선 (건)	31	17	9	17	9	7	18	7	8	7
계	38	22	14	21	12	10	18	8	8	8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2. 분쟁의 원인별 현황 및 분석

한국 업체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은 131건으로 발생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 3-2>와 같이 대금미지급이 46건으로 35.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품질분량이 37건으로 28.2%, 납기불이행이 29건으로 22.1%, 기타 19건이다.

<표 3-2> '02-'06년간 상사중재 분쟁 원인별 구분

원인별	대금미지급	납기불이행	품질분량	기타	계
건수 (중재/알선)	46(13/33)	29(7/22)	37(4/33)	19(6/13)	131(30/101)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이를 품목별로 보면, 다음 <표 3-3>과 같이 섬유류 19.1%, 1차산품이 15.3%, 전자전기 13.0% 및 화학제품이 13.1%을 차지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 '02-'06년간 상사중재 분쟁 품목별 구분

품목 별	1차 산품	섬유류	전자 /전기	화학 제품	철강 금속	생활 용품	수송 기계	기타	계
건수 (중재/ 알선)	20 (5/15)	25 (2/230)	17 (7/10)	7 (4/13)	11 (4/7)	9 (2/7)	5 (0/5)	27 (6/21)	131
비중 (%)	15.3%	19.1%	13.0	13.0%	8.4%	6.8%	3.8%	-	100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분쟁금액 규모에서도, 다음 <표 3-4>와 같이 1만달러 이상 10만달러의 분쟁이 70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1만달러 미만의 분쟁이 29건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건수면에서는 소규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 '02-'06년간 상사중재 분쟁 금액규모별 구분

규모별	1만달러 미만	1-10만 달러	10-50만 달러	50-100만 달러	100만 달러이상	계
건수 (중재/ 알선)	29(0/29)	70(13/57)	23(10/13)	3(3/0)	6(4/2)	131(30/131)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제 2 절 한 · 중 산업간 무역분쟁 사례

1 . 중국산 마늘분쟁 사례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의 마늘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게됨에 따라 생산자를 대표한 농협중앙회가 1999년 9월말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수입마늘에 2000년 6월 1일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3년간 30%에서 315%로 인상하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가 취한 긴급관세는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의 긴급관세부과 내역

구 분	제1차 연도 (2000.6.1~2001.5.31)	제2차 연도 (2001.6.1~2002.5.31)	제3차 연도 (2002.6.1~2003.5.31)
신선·냉장마늘 중 간마늘	60% 또는 300원/kg 중 고액(율)	58% 또는 288원/kg 중 고액(율)	56% 또는 276원/kg 중 고액(율)
냉동마늘	285% 또는 1707원/kg 중 고액(율)	274% 또는 1639원/kg 중 고액(율)	263% 또는 1571원/kg 중 고액(율)
초산조제마늘	285% 또는 1707원/kg 중 고액(율)	274% 또는 1639원/kg 중 고액(율)	263% 또는 1571원/kg 중 고액(율)

자료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6. 6. 7.

16) 재정경제부가 부과한 긴급관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 동안 간마늘의 경우 376%의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60%(또는 300원/kg)의 긴급관세를 부과했고(총 436% 또는 2,180원/kg),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의 경우 30%의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285%(또는 1,707원/kg)의 긴급관세를 부과했다(총 315% 또는 1,887원/kg). 이는 중국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WTO가 규정한 국내외가격차(냉동마늘 34%, 초산조제마늘 44%)보다 낮은 수준(30%+285%)인 315%에서 결정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 결과 구제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내 마늘생산농가에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때 중국정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0년 1월 12일 개최된 공청회 내용과 최종판정 사항도 통보하였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산업피해의 긍정판정을 내린 이후 중국정부가 구제조치를 위하여 협상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2000.4.24)과 북경(2000.7.17)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한국 정부는 다른 중국산 농산물의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하여 옥수수, 참깨 등의 수입확대와 현행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의 인하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의 제안을 중국 정부가 거절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5월 26일에 WTO에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통보하고 6월 1일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3년간 긴급과세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긴급관세 부과를 차별적인 보호무역조치라고 간주하고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자국의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근거하여 2000년 6월 7일부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¹⁷⁾.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양국대표가 마늘로 인해 발생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벌인 결과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에 한국은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백5톤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MMA물량과 매년 2만톤이 저율관세적용물량으로 정해져 2000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 2천톤은 통마늘, 건조마늘 등으로 기본관세율 50%로 수입되고, 나머지 2만톤은 민간에 의하여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로 30%의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중 마늘협상 이후 저율관세적용물량이 3만 2천톤(MMA

17) 박사룡, “통상권리의 원칙과 현실”, 『무역구제』 2001-7월 여름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p.3.

12,000톤, 나머지 2만톤)으로 늘어나고, 저율관세적용물량 이외의 민간 수입추정량은 5천톤으로 예상되며, 총 공급량은 51만 4,400톤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도매가격은 1,640원/kg으로 전망된다. 결국 긴급과세 부과시와 마늘협상이 타결된 이후의 공급량의 변화로 가격은 kg당 100원 정도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번 한·중 마늘 무역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과 국제법상으로 합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¹⁸⁾

이에 반하여 한국의 조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공산품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 보복조치는 (i) 한국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점, (ii) 관세율의 인상 등의 동등한 조치를 생략한 점, (iii) 대상이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선택한 점, (iv) 보복금액도 55배 이상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점 등에서 국제통상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만간 WTO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WTO회원국이라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한 위법적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공산품의 수입중단 보복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7조는 “상대국의 무역규제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조치는 그 정도나 절차,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중국의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이다¹⁹⁾.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이 이와 같이 조속하게 공산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관세부과에 대한 조치라고 보다는 지난 3년 동안 평균 45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이 총 생산량의 0.2%밖에 되지 않는 냉동·초산 조제마늘의 수출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것이다. 보복조치 시행에서 중국이

18) 송유철·박지현,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제 02-2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7.22.p.6.

19) 임정빈, “한·중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의 경과”, KREI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7.31. p.3.

주장한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내 마늘 생산자 및 수출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는 대 한국무역수지적자를 줄이고 양국간의 교류가 증가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한국의 대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한·중간 反덤핑 규제

한국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수지 흑자 증가는 양국간 통상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양국간 교역불균형 문제를 최대 통상현안으로 삼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반덤핑규제를 통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상품에 대하여 집중적인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²⁰⁾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trade remedy)제도이다.

1992년 중미 양국간에 체결된 시장진입양해각서와 중국 WTO 가입실무단에서 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 대외무역 관련 법률의 투명성 문제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산업피해구제제도와 대외무역법의 제정을 서둘렀으며 반덤핑조례와 상계관세조례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조례 등 3가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UR과 맞물려 그 제정을 미루어 오다가 1994년에 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단일한 조문을 두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한 바 있었다. 즉 반덤핑과 관련하여 총 8장 44조로 구성된 대외무역법중 제 30조

20) 정지원·박혜리·여지나, 『한·중 FTA 반덤핑 분야 : 제도 및 예상쟁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8.10. p.9.

에 반덤핑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외무역법 시행이후 반덤핑 조항은 그 시행령이나 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상계 관세 규제관련 6개 조문을 포함하는 총 6장 42개 조문으로 된 중국 반덤핑조례와 보조금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반덤핑조례는 WTO가입을 계기로 보조금 조례는 별도로 입법을 하고 기존의 조례를 대폭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반덤핑 조례는 그 동안 투명성 결여의 지적에 대하여 36개 조문에서 59개 조문으로 보충하여 실제적 내용을 상세히 하였고 또한 44개 조문으로 구성된 반덤핑 조사 입안에 관한 임시규칙²¹⁾과 기존의 25개의 조문으로 된 산업피해판정청문회규칙²²⁾과 함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복조치에 관한 규정과 우회덤핑에 관한 원칙성 규정 그리고 사법적 구제제도에 대한 미비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우회 덤핑의 방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과 조치에 대하여 관련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주요한 중국의 對韓 반덤핑 제소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문용지 분쟁

중국 최초의 반덤핑 규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산 신문지에 대한 조사 결정이었다. 관련 당국은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3개국의 신문지 덤핑 수출이 중국 국내산업에 야기한 피해가 입증된다고 '98년 7월 예비판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그리고 '99년 6월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렸다. 캐나다와 미국 기업은 이 사건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21) 反傾銷調查立案暫行規則, 2005. 5. 23

22) 產業損害裁定聽聞會規則, 1999. 12. 27

59%~78%의 덤핑 마진률을 부과 받았다. 한국은 한솔제지가 예비판정에서 받은 17.11%의 덤핑 마진이 최종 판정에서 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기타 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55%의 덤핑 마진률이 적용되었다.²³⁾

(2) 폴리에스테르 반덤핑 조사

두 번째 對韓 반덤핑 규제는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였다. '99년 4월 중국의 6개 업체가 제소한 데 대하여 동년 12월 중국 外經貿部는 SKC에 대하여 (주)효성 (주)코오롱 (주)세한 등 3社와 기타 한국 회사에 대하여 72% 덤핑 마진을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KC에 대하여 13%, (주)효성 (주)세한에 대하여서 33%, (주)코오롱과 기타 회사에 대하여 46%의 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

(3)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규제

세 번째 대한 반덤핑 규제는 '99년 6월에 이루어졌다. 중국은 일본산과 함께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00년 12월 최종 판정을 하였다. 한국은 인천제철의 경우 4%에서 최고 69%까지 그리고 일본은 27%에서 최고 75%까지의 덤핑 마진을 부과 받았다. 최종판정에서 한국의 포항제철을 비롯한 주요 6개 수출상은 중국당국과 가격인상 약속을 하였고 나머지 기업은 일률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57% 부과 받았다.²⁴⁾

23) 본 건은 중국이 최초로 반덤핑제도를 사용하고 조치를 취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본 건은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다루어진 사건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체 또는 산업이 법률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주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 주었다.

24) 본 건의 제기는 세계 양대 철강생산국에 큰 방향을 일으켰다. 일본과 한국 정부 및 기업은 대표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방중(訪中)하여 협상과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본

(4) 염화 메틸렌 반덤핑 규제

네 번째 대한 반덤핑 규제는 2000년 12월 20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염화 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2001년 2월 3일 한국과 일본 태국 등 3개국을 원산지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스티렌(polystyrene)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착수된 바 있다. 한국은 LG화학 동부화학 효성바스프 신호유화 제일모직 럭키 등 6개 업체가 일본은 8개 태국은 5개 업체가 각각 덤핑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외에도 2002년 새로운 반덤핑 조례의 시행 후 처음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결정을 하였으며, 2003년 6건, 2004년 10월 현재까지 6건이 조사 개시되고 있다.

3. 지적재산권 분쟁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²⁵⁾

그 동안 수출 주도적 경제 구조로 인하여 한국 상품의 해외 인지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국내외의 특허출원도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의 응소기업수는 전무후무하게 많았다. 또한 응소기업과 가격약속 협의를 체결한 것은 본건이 최초이다.

25) 조미진·박현정,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 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07-3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8.16.p.6.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나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도 선진국이나 개도국에서 모두 발생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양국 간 교역증대에 따른 한국 상품에 대한 지명도와 해외에서의 한국기업의 지명도가 제고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침해되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등록된 의장권이 간헐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특허권에 대하여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중 상대적으로 보호가 잘 이행되는 것으로 외국기업의 특허에 대하여서도 침해 발생 빈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관련 당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침해는 한국 기업의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 위조 상품의 은밀한 제조 유통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침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민·형사상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제기된 미국의 對中 스페셜 301조 발동²⁶⁾은 양국 간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가장 빈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통상 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표권은 다른 권리에 비하여 모방이나 도용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등록된 상표에 대한 침해상품이 중국 내에서 유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제3국으

26) 2007년 미 무역대표부 연례 보고서 “스페셜 301조”: 우선감시대상국은 미국 무역법의 스페셜 301조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일종인데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인들이 당해 시장에 정당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들을 가려내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미국 무역부는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및 특별관심국(SM)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로 다량 수출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기업의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상품이나 모방상품 등 저질의 중국 위조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면 기업에 대한 공신력과 상품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상품의 판매 기회가 잠식됨으로써 판매수익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²⁷⁾ 기업 및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해외시장에 널리 형성되어 해외 마케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상표권 침해를 등록 여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무단 선등록 되는 경우이다. 로만손(ROMANSON)이라는 제조업체는 93년 중국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여 상표를 중국에 출원 의뢰하였으나 이미 중국 기업이 로만손 상표에 대해 출원을 의뢰한 상태에 있었다²⁸⁾. 후에 상표를 등록한 중국 회사가 당사 거래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시장에서 영업 손실은 상당하였다. 로만손은 각종 증거제시와 함께 중국법원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97년에 승소 판결을 받아 99년에야 등록을 하였다. 이 사례는 한국기업의 상표를 중국의 현지 기업이 침해하여 무단 선등록한 것으로서 비록 철저한 준비로 법적 대응을 하여 승소하였지만 그 동안 이 기업이 중국에서 많은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등록된 권리에 대한 위조 침해 상품 유통의 경우이다. 농심은 중국과 홍콩 등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스턴트 식품 제조업체로서 홍콩의 한 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었다. 그러나 홍콩 기업은 농심과 거래를 청산한 후 辛라면과 포장 색깔 및 디자인 등에서 유사한 상품인 辛辣라면이라는 상표로 포장지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제조원도 한국으로

27) 2006년 관세청이 짝퉁단속으로 적발한 1010건 중 중국발 짝퉁 적발건수는 7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으로 인한 수출차질 피해예상액이 17조원에 이른다.(조세일보, 2008.1.22)

28) 중국은 '선(先)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중국 업체가 한국의 인기 상표나 아이디어 제품을 모방해 먼저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지재권 등록 상품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기도 한다. 모자에 부착하는 플래시 상품을 고안해 중국 특허 당국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을 받은 N사는 2007년 모조 상품을 발견한 지 9개월 만에 행정 당국의 폐기 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동아일보, 2008.4.22)

표기하여 한국산으로 오인케 하여 중국과 홍콩에 유통시켰다²⁹⁾. 당해 기업과 개별협상을 통하여 침해를 해소한 후 당국에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幸이라는 글자 하나를 한 기업이 독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현재 홍콩 관련기관에서 상표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등록된 권리에 대한 위조 침해된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이다. 한국의 기업은 ‘JALBAGA’란 상표로 재봉틀 바늘을 중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었다. 중국은 의류 및 봉제산업의 성장으로 재봉틀 바늘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해당 기업은 자사의 상표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상표국과 특허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와 특허를 모두 출원 등록하였다. 하지만 현지 기업에 의하여 상표가 침해되어 조잡한 품질의 재봉틀 바늘이 정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 내에 유통되었고 위조상품들이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에까지 수출됨으로써 인하여 한국의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³⁰⁾ 해당기업은 침해기업이나 신원과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신용장 및 서류하자관련 분쟁

국제관례상 신용장 거래는 수출입계약과 독립되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류상의 거래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은 외국측이 중국측 신용

29) 중국 감숙성(甘肅省)에 위치한 박태기차배건유한공사(博泰氣車配件有限公司)에서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에 사용되는 부품 (냉각기, Electronic Fan Assembly, Front Brached Frame, Rear Brached Frame 등 제품)에 중문의 부품명칭과 생산공장명, 생산공장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고 현대의 로고 및 HYUNDAI MOBIS, HMC 등 만을 새겨 제조 유통하다 적발되었다.(KOTRA 청다오무역관, 2008.2.13)

30) 최근에는 중국산 공구에 원산지 표시 없이 미국 공장주소 또는 일본 특허 등을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행위나 위조공구를 진정상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조세일보, 2008.5.8)

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지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중국측 개설은행의 대금 지불 거절은 화물을 받은 수입상이 수량, 품질 등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정지명령과 협조통지를 내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장 독립성원칙³¹⁾의 예외와는 성격이 다르며 지급정지 명령 제도를 남용한 것이다. 이는 중국지방법원의 지방보호주의와 큰 관련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L/G상의 문구상 불일치를 하자로 대금지급거절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주로 시황 변경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악용하게 된다.

선적일자 및 서류수정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서류 수정 없이 진행하는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수출자의 업무편의를 이유로 원칙을 위반한 back date 등의 위조사례 및 수입자에게 B/L 선 제공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요인으로 신용장 자체의 한계성을 들 수 있다. 신용장 자체의 한계성에는 첫째, 신용장 통일규칙의 결함에 따른 요인 둘째, 신용장 관련 조항 불완전성에 기인한 요인 셋째, 서류심사의 해태에 기인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 환어음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스펠링 체크 등 경미한 사항까지 철저한 사전검토를 해서 인수거절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조건부 신용장여부 또는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문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3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이란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신용장 독립성이라 한다. 이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을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시켜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로 B/L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자앞으로 송부하는 경우 수입자가 동 B/L을 가지고 화물을 인출한 후 클레임(Claim)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수입자는 화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B/L을 수입자에게 직접 선(先) 송부해주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한편,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 불일치를 통보받으면 신용장 서류 제시기한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수입자와의 협상에 임해보되 최종적으로 서류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화물도착 후 3개월 이내에 제3의 수입자를 물색하여 전매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신용장 거래의 최종적인 대금지급책임은 사실상 수입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거래이전에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³²⁾

5 . 대금회수 관련 분쟁

바이어가 제품수령 후 상품하자를 이유로 시황변화에 따른 마켓 클레임³³⁾을 제기하는 사례는 수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쌍방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쌍방의 타협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적 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상의 분쟁조항에 중재를 통한 합의를 명기했다면

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진출성공/실패사례, 2004. 10. 15.

33) 마켓 클레임(Market Claim)은 무역클레임의 일종으로서 상품시가의 하락 때문에 매수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으로서 인도품과 견본과의 약간의 상위를 구실로 가격인하 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클레임을 말한다. 즉, 매도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발생한 상품의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에 대해 매수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 클레임을 총칭한다.

중재를 통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승소의 의미는 별로 없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상호간에 분쟁조항을 통한 중재합의가 없고, 둘째, 상대방이 금전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용의가 없으며 셋째, 상대방이 지불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등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시효가 늦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호사 선임 시 관련분야에 대한 법률지식, 로비 및 활동능력, 성실성 및 신뢰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³⁴⁾. 지방인 경우, 지방권력기관 개입으로 부당 압력 소지가 있는 경우는 중앙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는 지방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인단체 또는 한국정부기관에 협조요청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 한국상회 등 단체의 도움과 대사관등 정부기관의 협조가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34) onbao 뉴스, 중국변호사의 성적표, 2008.1.21

제 IV 장 한·중 무역분쟁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제 1 절 산업간 분쟁 대응방안

1. 통상조정시스템 구축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외국과의 교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는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한 무역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WTO 회원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국내산업의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특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³⁵⁾

산업간 무역분쟁은 어느 일방의 피해의식에서 발생한다. 무역관계에서 피해의식은 수출입 상품구조, 무역액 등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불만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 중국 교역상황을 살펴보면 수출구조가 특정상품에 집중되고 있어 중국이 자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역할의 일환으로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미 한국은 중국과 경제 통상 분야에서 많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³⁶⁾ 특히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중 무역실무회담이나 경제장관 회담 등을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실무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경제 현안에 대하여 사

35) 이신규, “한·중 마늘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의미와 평가”, 2002.

36) 2005년 11월 16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 및 한중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간 무역마찰을 사전 예방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에 충분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론적인 차원에서 통상마찰 또는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예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협상부처와 이해부처가 다른 데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대중 통상문제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통상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난립되어 있는 대중 통상관련 민간기구나 경제단체 등의 업무나 역할을 조정하여 대중통상 문제의 효과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³⁷⁾

2. 선진무역구제기관 위상 확보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2003년에 18.1%를 기록하며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많은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3년 3월 미국무역대표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상무부를 출범시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과의 무역분쟁이 잦아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1위 반덤핑 규제대상국이며, 분쟁해결을 위해 많은 무역협상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적이 있어 중국과의 무역분쟁의 해결에 임할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³⁸⁾

첫째, 충분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통상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여 철저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37) 2006년 4월 26일 한중 양국의 무역과 투자 교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은 한·중문관 으로 운영되며, 양국의 무역투자 정책, 법령 및 제도 관련 사항, 주요 경제지표 및 시장정보, 무역투자환경 정보, 투자프로젝트 정보 및 기업정보와 제품정보 등에 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38) 탁세령, “중국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방법”,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7. p. 2.

긴급관세부과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에 따라 취해졌다고는 하나, 마늘분쟁 당시 중국이 WTO 비회원국임을 감안하고 우리와의 막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중국의 불만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내 마늘농가의 보호를 위한 긴급관세부과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무역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중 마늘 무역분쟁 심의시 무역위원회의 수입규제심의회는 모두 8명의 위원이 맡고 있었다. 이 중 상근직은 상임위원 한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상임위원으로 수입규제관련 심의가 있을 때만 업무에 관여하였다. 수입규제에 관한 심의는 덤핑수입인지 여부에서부터 저가 수입품으로 인하여 한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임을 감안할 때 현행의 비상임위원을 중심으로 무역위원회가 운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선진무역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및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³⁹⁾.

셋째, 중국의 보복위협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부처 및 업계간의 이해관계 상이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부처간 의견에 대해 조정역할을 강화하거나, 통상마찰시 부처간 의견조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늘분쟁에서 드러났듯이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통상교섭본부와 여타 통상관련부처들 사이에서 의견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넷째, 협상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뉴라운드협상은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오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 협상을 담당할 전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 정부부처의 공무원에 대해서 대부분 순환보직이 행해지기 때문에 통상협상에 지식이 없는 공무

39) 김호원, FTA시대 무역위원회의 역할 재조명, 『무역구제』 제30호, 2008.4월 봄호,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2008.4.20.p.3.

원이 업무를 맡을 경우 원활한 협상진행 어렵게 된다.

3. 통상자문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중국의 불합리한 통상 보복조치에 대하여 중국의 WTO가입 후 무역정책검토제도(TPRM)⁴⁰)를 통하거나 분쟁해결기구(DSB)에의 제소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통상법 301조나 EU의 신통상정책수단⁴¹)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계속 존치된다면 WTO하에서도 이 조치들을 철폐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방적 조치의 발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보다 사후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사자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지만 이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후구제는 물론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당사자인 해당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0)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WTO 회원국의 무역 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 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 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 주기는 국별로 상이한데,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한국을 포함한 5-20위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는 6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41) 신통상 정책수단(NCPI: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은 1984년에 채택된 유럽연합(EU)의 통상보복조치이다. 불공정무역을 하는 국가에 대하여 관세율 인상, 수입수량 제한 및 수입부과세 징수 등의 통상보복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슈퍼 301조와 비슷한 통상정책이다.

해당 기업차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절차나 사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방안이 없다. 중국에서의 침해구제 방법으로 특허권 분야에서는 주로 사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상표권의 침해에서는 행정적 해결방법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 상표침해의 구제와 관련하여 대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침해자의 거주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이 있는데 공상행정관리국은 단지 상품에서 침해상표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둘째, 법원에의 제소를 통한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고 위조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정도일 경우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술 감독국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도 있다. 기술 감독국은 침해품을 몰수 폐기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침해품이나 모조품의 품질이 조잡한 때에는 오히려 기술감독국의 침해 구제가 신속하고 유리한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상표권자들이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기업이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생산한 상품을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상품 압류현황에 따르면 미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위조 및 가짜상표 부착 수입상품 중 중국이 약 60%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적발 건수와 금액을 보이고 있다⁴²⁾. 또한 일본 세관이 적발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중 중국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⁴³⁾

따라서 불공정 수출입행위 조사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세관에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철저히 규제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서 무역분쟁 제소를 많이 당하였기도 하지만 반면

42) 서울신문, 2006.2.11

43) 일본세관에서 '2007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발건수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4.5%에서 2007년에는 20%로 급감했다. 건수에서도 일본세관 전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06년 1만9591건에서 2007년 2만2661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중 한국산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06년 8720건에서 2007년 4527건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반면 중국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적발건수는 2006년 48.2%에서 2007년 71.1%비중으로 급증했다(조세일보, 2008.3.19).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 조사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실무운영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비록 아직까지는 중국은 반덤핑 제도의 운영에 있어 미국, 유럽의 조사기법을 단순히 복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차츰차츰 중국 고유의 제도 운영 쪽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이 잠정규칙이나 계속되는 관정을 통하여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한국의 중국수출과 중국측의 반덤핑 조치 활용건수를 미루어보면 중국의 반덤핑제도 실제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기업을 위시하여, 관련 정부기관, 유관 학계, 그리고 국제통상 자문기관 들은 정보공유의 기회를 확대하며,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실무적인 운영 및 변화방향들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상사간 분쟁 대응방안

1. 당사자간의 협상력 강화

앞 장의 상사간 무역분쟁의 사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분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전 준비 없이 기대감에 의한 소액 거래에서 점차 거액으로 거래하다 실패한 경우와 소개자를 과신한 나머지 상대방의 신원과 신용과약을 도외시 하거나 성급한 계약체결로 미래의 발생 사건에 대한 대비책의 부재가 많았다⁴⁴⁾.

또한 중국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중국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소한 오해가 감정대립으로 발전한 경우와 중국 및 중국법을 무시하고 관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중국과의 무역 거래시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금의 회수가 매우 어려우므로 대금 회수의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제품을 먼저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중국에서는 법 집행이 어렵다는 실정을 고려하여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바람직하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분쟁 발생시 재판이나 중재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상 또는 유관 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부문 보호주의로 재판이나 중재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집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협상의 요령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견 대립

44) 최근 한중 무역분쟁의 특징은 ① 분쟁의 원인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건이 많다. ② 거의 대부분의 분쟁이 일방의 잘못이 아니고 한중기업체의 공동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 ③ 분쟁의 당사자가 한국과 중국기업체가 대다수이지만 때로는 중국거래로 인하여 한국기업체간에도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11.17 참조)

이 심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접촉이 오히려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쌍방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하여 중개토록 하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효과적이며, 협상 시에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가능한 한 문서 내용을 이행할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합의된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2. 불법행위 업계자제 노력강구

한국 기업의 불성실한 통관을 자제해야 한다. 수입하는 원자재 컨테이너에 신고 내용과 다른 물품을 적재하거나 신고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등의 불성실 통관이 중국 세관당국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례가 늘게 되면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됨과 동시에 세관 담당자에 대한 뇌물 공여 사례도 함께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대중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스스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관시가 중시되는 사회로 사업 초기부터 지방정부나 관련 기관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유관 부서의 관계자와 평상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省, 市, 鎮, 縣 등 지방정부는 원자재, 세무, 자금, 인력, 에너지, 건설, 수출입, 통관 등 기업의 외부 환경과 관련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원 배분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들로부터 정책과 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시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인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모든 법령과 체계가 국제규범에 맞도록 변화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경제논리와 합리적인 경영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

요하며⁴⁵⁾, 몇몇 유력 인사와의 관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경쟁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3. 대금결제 위험도 사전대책 강구

중국과의 거래시 대금결제 관련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철저한 사전대책 강구로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첫째, 신용 과신은 금물이다. 한국의 무역업체나 은행 모두가 대 중국 무역거래시 신용장을 너무 믿고 있다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 수입상의 편에 서있는 중국측 개설은행은 사소한 하자를 찾아내 대금 지급거절을 국내 네고은행에 알려오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또한 아무리 서류상 하자가 없더라도 의뢰인이 입금을 하지 않으면 중개자인 은행 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따라서 신용장만 개설되면 모든 거래가 성공리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중국측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능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거래선의 신용을 판단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한 상대방의 재정상태, 거래능력 등 신용도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⁴⁶⁾ 계약체결 전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 정보를 파악, 신용도를 분석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거래시에도 수시로 상대의 신용상태 변화를

45) 주상하이총영사관, “경제분류 사전예방 및 사후 대처요령”, 2005.5.25

46) 신용조사는 3C's 즉, (가) 재정상태(capital)-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지급능력. 자기자본, 수권자본, 차입자본, 지급능력, (나) 경영능력(capacity)-연간 매출액, 취급품목, 거래관계, 생산능력 등. (다) 상도덕(character)-거래형태, 평판, 경영방침, 상업적 도덕성, 계약 이행의 성실성, 경영자의 인격, 채무지급 태도 등이다.

점검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품질, 수량 등에 관해 중국측과 구체적인 내용을⁴⁷⁾ 반드시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기타 필요한 서류나 보완내용에 대해서도 양측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KOTRA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정한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 피소지 중재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한국측이 중국측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중재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중국측이 한국측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중재는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다. 계약서 내 중재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문제발생시 구제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중국측의 의도파악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중국측에서 사소한 하자를 트집 잡아 지급거절을 통보해 올 경우 신속하게 지적내용을 보완,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상대방이 하자를 지적, 지급을 거절할 경우 상대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로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사례연구를 통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별로 절강성, 해남도, 동북 3성 등 지역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과 거래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또한 다른 회사가 당한 피해사례를 사전 충분히 연구함으로써 사례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유사한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현지공관 및 KOTRA 현지무역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

47)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인 ①품질조건(Quality Terms), ②수량조건(Quantity Terms), ③가격조건(Price Terms), ④운송조건(Shipment Terms), ⑤결제조건(Payment Terms), ⑥보험조건(Insurance Terms)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포장조건이나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그리고 불가항력(Force Majeure) 및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관 등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다.

제발생 즉시 현지공관 및 KOTRA 현지무역관에 신고, 중국 각급 정부기관을 통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번째, 매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하며 따져야 할 것은 반드시 꼼꼼히 따져서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소지를 없애고,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유지에도 유리하다.

중국과 인연을 맺은 이상 중국의 관습등을 배우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자신의 사업은 물론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중국인은 자존심이 강하므로 무시당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하려고 한다. 너무 믿고 맡김으로써 문제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관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홉번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한 것은 증거뿐임 반드시 물증을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시간을 끌며 지치게 한 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4. “중국경제 모니터링” 활동 확대

상거래 분쟁은 불투명한 미래, 곧 기업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래위험 요인에 대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면, 기업활동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거래당사자간의 분쟁발생의 여지는 낮아질 것이다. 즉, 한국과 중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한중간 상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중국경제 모니터링”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⁴⁸⁾

분쟁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분쟁해결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는 방법, 전문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방법, 계약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법, 중국의 상관습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는 방법, 상대방에게 인간적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방법 등이 권장되고 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국내거래와 같이 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에서는 초국가적인 법률과 법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여의치 않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한 국제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준거법의 결정, 국제재판 권한권,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48) 전윤중, “한중간 국제거래분쟁의 현황과 해결과제”, 『수출보험』, 2008.01.02월호, 한국수출보험공사, 2008.2.20, pp.28-29.

제 V 장 결 론

중국은 현재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국가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와 정책을 아끼지 않으며 자국에 이익이 되는 형태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며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의식과 상관행에서 보여준 자국 우월주의에 의한 보복조치와 협상정책은 약소국가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중 산업간 무역분쟁은 수년간 지속된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적자의 누적과 중국 산업구조에 심각한 대한의존성 등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련의 보복조치성의 정책이란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반덤핑제조를 가장 많이 받은 중국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무역구제조치들을 현재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고려한 통상정책과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산업구제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세계 시장에서 또는 중국시장에서 대응해왔던 방법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분산되어져 있는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를 통합하여 분쟁발생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정부부처나 업계간의 이해관계 상이로 중국의 보복위협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통상교섭에서 부처간 업계간 의견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전문가의 양성과 무역 분쟁기구의 활용 등을 통한 다각적인 처방 안을 마련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하에 협상을 유리한 형태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나 기관들의 자국민 보호주의와 불완전한 중국 내 거래환경의 실태와 제도로 인하여 많은 무역 분쟁 사기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는 노력으로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신용장 및 선적서류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발생되어질 분쟁에 대비한 중재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중국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이미 발생되어진 분쟁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지공관 및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국이 생각하는 중국은 법과 사회가 무질서하고, 지역마다 다른 법적용체계와 관시에 의한 일처리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WTO 가입후 현재 중국이 세계의 무역대국으로 발전하면서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의외로 법이 잘 발달된 나라며 그 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다.

상사간 무역 분쟁도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계약 체결 시부터 분쟁발생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며, 불법 혹은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현지의 법률과 관습을 이해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에 있어 약간의 불법적 행위도 법률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이나 거래의 확대를 위하여 무시하고 넘어가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상대하는 중국은 세계가 인정한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들에게 대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